

구미50+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50+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50+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중년층(45세~64세) 대상의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- 나.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의 기획·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과 경험 등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구미50+센터 운영

나. 추진근거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2) 「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다. 위탁사무 : 구미50+센터 운영 전반

- 1) 취업상담·연계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
- 2) 취업지원 컨설팅 및 직업교육
- 3) 근로 상담 및 지원, 그 외 고용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
- 4) 신중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
- 5) 사회공헌 사업 수행 등

라. 시설개요

구 분	내 용
시 설 명	구미 50+센터 ※ 現)구미청소년상담센터
위치 및 규모	구미중앙로 11길 13 , 417.75㎡, 지상 2층
시 설 구 성	• 1층 : 사무실, 상담실, 로비, 대기실, 정보검색실 등 • 2층 : 교육실, 커뮤니티실 등

마. 위탁기간 : 2026 ~ 2028 (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간)

바. 전담인력 : 4명(센터장 1, 직원3)

사. 위탁조건

- 1) 신중년 취업관련 위탁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
- 2)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, 단체사무 처리 불가
- 3) 「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, 구미시와의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아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1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- 2) 평가내용 :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- 3) 평가방법 :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자. 소요예산 : 300백만원(시비)

차.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 ※ 2025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3. 부서의견

- 신중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(2) 「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(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

- 제7조(시설의 위탁)**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

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

제5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구미50+ 운영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구미50+ 운영 위탁 시, 사업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인건비는 전담인력 4인 기준으로 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

가이드라인」 및 「경상북도 생활임금」에 준하여 산정함

나. 2년차 연도부터 인건비,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3% 인상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300,000	309,000	318,270	327,818	337,653	1,592,741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시비	300,000	309,000	318,270	327,818	337,653	1,592,741

5. 부대의견 : 연간 위탁금액은 사업계획, 예산심의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6. 작성자 : 어르신복지과 노인정책팀 김하은(480-515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금액(천원)	산 출 근 거
합 계	300,000	
인 건 비	200,000	·센터장 1명×3,800천원×12개월 = 45,600천원 ·직 원 3명×2,800천원×12개월 = 100,800천원 ·각종 수당, 4대보험 부담분 등(4명) = 53,600천원
운 영 비	50,000	·사무관리비 - 행정사무용품, 소모성물품 구입비 - 안내·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등 ·공공운영비 - 공공요금 및 제세 등 ·차량임차 및 수선비, 유지비
사 업 비	50,000	·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비 - 재취업교육 -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-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

소 관 부 서		어르신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최 창 수
	팀 장	김 율 자
	담 당 자	김 하 은 (480-5153)